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83

발의연월일: 2025. 6. 9.

발 의 자:정춘생·황운하·백선희

김준형 · 신장식 · 이해민

박은정 · 차규근 · 서왕진

김선민 · 강경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희생자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인을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및 그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조카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한편, 현행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추가하고, 인지청구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사람,"을 "사람 및 그 유족,"으로, "사람은"을 "사람 및 그 유족은"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인지청구 등의 특례) ① 여수·순천 10·19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00000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0000년 0월 0일을 말한다) 이후 4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청구의 소 제기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 정한다)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2조의 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인지 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조의2(특별재심) ① 희생자로 제12조의2(특별재심) ① ---서 여수 · 순천 10 · 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 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사람 및 그 유족,----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 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 ----사람 및 그 유족은 소송법 1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 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인지청구 등의 특례) ① 여수・순천 10・19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 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법률 제00000호 여수·순천 1 0 ·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0000년 0 월 0일을 말한다) 이후 4년 이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

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있다.